계좌간자동이체약관

제 1 조 자동이체방법

은행은 거래처의 자동이체 신청에 따라 지정일에 통장, 수표, 지급청구서 없이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을 입금계좌로 이체한다.

제2조(지급자금 부족때의 처리출금)

- ①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면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처리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금계좌가 대출계좌인 경우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.
 - 1. 이체지정일 까지 출금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은 이체지정일부터 이체하며, 출금계좌의 출금가능액이 이체금액에 미달할 경우 영업시간 이후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 - 가. 출금가능액 범위 내에서 매영업일 원단위로 이체한다.
 - 나. 출금가능액이 발생 연체이자에 미달하는 경우 이체하지 아니한다.
 - 2. 대출계좌의 약정납입일보다 이체지정일이 앞서고 약정납입일 전 납부가 가능한 대출의 경우 대출계좌의 약정납입일 전까지는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 이체하고, 약정납입일 이후부터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이체 처리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연체중인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상환원리금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도 연체 기준일은 변경되지 않는다.
-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대출, 정책자금대출, 기타 달리 정함이 있는 대출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이체 처리한다.

제3조(여러건의 이체처리)

같은날에 이체대상이 여러건 있는 때 이체처리순서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증권의 부도)

거래처의 출금계좌에 입금한 자기앞수표, 가계수표 등 증권이 지급거절 되었을 때는 자동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한다.

제5조(신청내용의 변경, 해지 신고)

거래처가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체지정일 전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이체일 및 이체금액 미지정때의 처리)

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, 채무 등 이체대상만을 지정하고 이체일 및 금액에 대한 지정없이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그 대상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체한다.

제7조(준용)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, 관련예금약관, 신탁약관,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은행내규를 준용한다.

